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755 제출연월일: 2024. 8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・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
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, 분사무소나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민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2756호) 및 「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 7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"을 "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등기사항"을 "등기사항 및 등기절차"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) ① 법인이 분사무소(分事務所)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- 1.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
- 2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법인이 대리인, 지배인,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자(이하 "대리인등"이라 한다)를 선임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사무소의 이전등기)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

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시범사업의 특례)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.
- 제3조(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 기록에 이기(移記)하고,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제4항 중 "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"를 "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8항 중 "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"로 한다.

제18조의2제8항 중 "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,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"로 한다.

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 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"로 한다.

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 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한다.
-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93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

3주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"로 한다. 제95조제1항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96조 전단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제97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99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"로 한다.

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"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"을 "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"으로, "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"를 "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"로 한다.

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6조 본문 중 "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"을 "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"으로 한다.

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"로 한다.

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 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7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80조제1항 중 "2주 이내에 그 사무소"를 "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81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"로 한다.

제83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

- 이내에"로 한다.
-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5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 다.
-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6제1항 중 "본점 및 지점"을 "본점"으로 한다.

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6조(분사무소의 설치 등기)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한다.
-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49조 중 "3주간 내에 그 사무소"를 "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3주간 내에 그 사무소"를 "3주일

내에 주된 사무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"로 한다.

제80조의2제7항 중 "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 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과 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-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한다.

제95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"로 한다. 제97조제1항 중 "각각 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 제9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"로 한다.

제100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"로 한다.

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(支事務所)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②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제59조제4항 중 "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제86조의3제1항 중 "주사무소 및 지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제86조의4제6항 중 "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③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"를 "주사무소"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"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"를 "주사무소"로 한다.

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"각 사무소"를 각각 "주된 사무소"로 한다.

⑤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"를 "주사무소 소재지"로 한다.

(16)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4항 중 "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, 분사무소에서는 3 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"를 "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2조(지사무소의 설치등기)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 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-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한다.
-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65조제1항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66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이내에"로 한다.

제66조의2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이내에"로 한다.

제68조의2 중 "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107조제1항 중 "그 사무소"를 "주된 사무소"로, "설립등기를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"를 "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"로한다.

제108조제1항 중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이내에"로 한다.

제108조의3 중 "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,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"를 "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	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<u>특례법</u>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법인(특별법	 제1조(목적)		
에 따라 설립된 법인, 상사법			
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. 이			
하 같다)의 <u>등기사항</u> 에 관한	<u>등기사항 및 등기</u>		
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	<u>절차</u>		
로 한다.			
제3조(분사무소의 등기사항) 법	제3조(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)		
인의 분사무소(分事務所)나 지	① 법인이 분사무소(分事務所)		
점에서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	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		
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	사무소(主事務所)나 본점의 소		
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	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		
<u>다.</u>	<u>등기하여야 한다.</u>		
1. 목적	1.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		
2. 명칭 또는 상호(商號)	와 설치 연월일		
3.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	2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		
4.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	<u>하는 사항</u>		
5.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	② 법인이 대리인, 지배인, 간		
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	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		
간 또는 사유	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		
6.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·	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		

주소와 주민등록번호

- 7.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
- 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
- 9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

<신 설>

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(이 <u>하 "대리인등"이라</u> 한다)를 선 임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8.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 |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 <u>기하여야</u> 한다.

> 제3조의2(사무소의 이전등기)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 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 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 다.

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 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